□2 타이어 검수 및 적재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나이
 53세
 직종
 타이어 적재 및 검수
 업무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망)고○○은 1999년 타이어 생산 하청업체에 입사하여, 타이어 검수 및 적재에 주로 종사하다가, 2006년 9월 6일 ○○병원에서 소세포 폐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2007년 5월 29일 사망하였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고○○은 44세 때인 1999년 11월 9일 ○○타이어(주) 협력업체 ○○(주)에 입사하여 2006년 8월까지 ○○타이어 생산 공정의 검사공정(품질관리팀 검사부)에서 4조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업무는 검사공정에서 버핑을 마친 타이어를 적재하는 일이었다. 검사공정은 가류와 버핑 작업장 근처에 위치하며 콘베어로 이송되는 타이어의 외관을 검사하며 타이어를 잡고 동일규격 적재 렉카에 적재,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다. 타이어 적재량은 약 10~15분 동안 레카차에 6~7개 정도 적재하며, 그 일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그 외에 생산된 타이어를 외관 검사하고 마킹이 잘못 찍힌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 솔벤트를 통에 담아 칫솔 등으로 타이어 날인부위를 닦아낸 후 날인하는 일이다. 작업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측정된 바가 없다. 작업량은 일부 유가족의 진술과 사업주,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들었을 때, '작업량은 많지 않았다'고 하며 일부는 '하루 10개 남짓'으로 파악되었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망)고○○의 흡연은 유족과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 차이는 있으나 2006년 9월 ○○병원에서 작성된 입원기록지에 30갑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가족 중 암에 걸린 사람은 없었으며 다른 내과적 만성 질환도 없었다. 2002년 부터 2003년까지 일반건강진단에서는 흉부방사선 검사소견이 정상이었고, 2004년 흉부방사선 검사상 늑막비후(좌하) 비활동성으로 판정되었다. 2006년 8월경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기침이 심해져 2006년 9월 3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종양이 발견되었다. 같은 해 9월 6일 ○○병원에 입원하여 소세포 폐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하였다. 증세가 심해져 5월 20일 다시 입원하여 치료하던 중 5월 29일 사망하였다.

4 결 론

근로자 (망)고ㅇㅇ은

- ① 입사한 이후 6년 10개월만에 소세포 폐암이 발생하였는데,
- ② 폐암을 포함한 고형암이 통상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지니는데, 근로자 (망) 고○○의 노출기간 10년 이하로, 업무상 노출되는 유해요인에 의해 폐암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 ③ 작업장에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무흄, 고무분진, PAH 의 노출 수준은 2007년의 노출평가시 낮았고, 이러한 작업환경은 과거와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 ④ 근로자 (망) 고○○에게는 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흡연력 등 비 직업성 발 암요인이 있으므로,

근로자 (망)고〇〇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6 ▮ 산업안전보건연구원